

# 기숙사 운영내규

- 제정 : 2017.04.01.
- 개정 : 2019.04.01.
- 개정 : 2022.03.01.
- 개정 : 2022.07.01.
- 개정 : 2024.03.01.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기숙사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용)

- ① 기숙사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 ② 기숙사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허가에 의하여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한다.

### 제3조 (개관기간)

- ① 기숙사의 개관기간은 매 학기 및 방학 개관일로부터 퇴관일까지로 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개관일: 1, 2학기 개강일 기준 4일 전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2. 퇴관일: 1, 2학기 종강일로 한다. <개정 2022.07.01.>
  3. 방학기간 중 개관일과 퇴관일은 기숙사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신설 2022.07.01.>
- ② 퇴관일 이후 다음 학기 개관일 전일까지는 시설 보수 및 다음 학기 입사 준비를 위하여 휴관한다.
-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감은 개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출입시간)

- ① 입사자는 기숙사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문 : 05:00
  2. 폐문 : 01:00
- ② 사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장 입 사

### 제5조 (입사자격)

- ①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및 재학생
- ② 정규학기 등록자

- ③ ~~재학생중 편입 및 휴학 등의 사유로 본 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삭제 2022.07.01.>~~
- ④ 부모(양친) 모두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사정에 의하여 분리 거주할 경우 가까운 한쪽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⑤ 거주지 거리에 따른 점수는 <별표 1> 거주지 거리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과한다.
- ⑥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 1. 해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에서 수학해야 하는 자
  - 2. 고시반에 소속된 고시반원
  - 3. 학군단 후보생
  - 4. 평생 교육원생
  - 5. 사감이 임명~~한~~ 생활지도 근로장학생 및 인정한 자 <개정 2022.07.01.>
- ⑦ ~~매 학기 정규 입사 선발 완료일 이후 추가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경우 편입생 및 입학 후 군 입대 사유로 휴학하여 성적이 없는 자에게도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삭제 2022.07.01.>~~
-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삭제 2022.07.01.>~~
  - 1. ~~학부 재학생 중 최우선 선발 대상자 중 일부(대학 입사 전형 장학생 우선 선발 기준에 따름)~~
  - 2. ~~신체 장애학생(3급 이상 장애)~~

제6조 (입사제한 대상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3. 법정 전염병 환자,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4. 전염병 질환의 이환 및 보균자
  - 5. 휴학 중인 자
  - 6. 기타 사감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자

제7조 (입사자 선발)

- ① 정규 입사자는 학기 및 방학별로 선발하여, 정규 입사 선발이 완료된 이후에 입사 포기자나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추가 입사자를 신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 ② 방학 프로그램이나 외부행사 등 정규 입사 외 입사는 방학 중 기숙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8조 (입사신청)

- 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01.>
- ② 입사신청 시 모집요강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입사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얼굴 정면)
  - 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세대주와의 관계가 보이도록 함)

3. 결핵검진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결핵검진 기록이 있는 보건증도 가능)

4. 신체장애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9조 (선발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④ 1순위

1.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교내 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전액 감면에 해당하는 자(수혜기준에 따른 적용된 기간까지로 한정함) <개정 2022.07.01.> <삭제 2024.03.01.>~~

① 우선순위

1. 신체 장애학생(중증장애, 거주지 제한 없음) <개정 2022.07.01.>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학생 :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고운학사 신청 시 우선순위)  
<개정 2024.03.01.>

3. 아동 복지시설 퇴소 학생

4. 소수집단학생지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22.07.01.>

② 거주지 거리 점수와 입사기준 성적순

③ 외국인 학생, 고시반원, 학군단 후보생 등 선발 부서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입사 대상별 최종 선발 이후 미충원이 있을 경우 사감이 정하는 임의 선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기숙사비 납부)

① 입사 대상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합격 확인 후, 기숙사비 납부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01.>

② 지정된 납부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입사기간) <개정 2022.07.01.>

① 기숙사의 매학기 및 방학 정규 입사기간은 기숙사에서 지정한 개관일로부터 퇴관일 내에서 정한다.

② 정규 입사 외 입사기간은 기숙사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호실 배정) <개정 2022.07.01.>

① 정규 입사자의 호실 배정 방식은 기숙사에서 임의로 정한다.

② 방학 입사자의 호실 배정 방식은 기숙사에서 임의로 정한다.

③ 배정된 호실은 기숙사 행정팀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4.03.01.>

### 제3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3조 (기숙사비)

① 기숙사비는 관리비를 포함한다.

② 입사자는 기숙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비 납부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납부 기간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 입사 허가가 취소된다.

④ 매학기 및 방학 개강일 이후 중도입사자는 입사일을 포함한 입사기간별 잔여일수의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천원 미만 절사) <개정 2022.07.01.>

⑤ 정규입사 외 외부행사 숙소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하며 프로그램 및 외부행사 숙소사용료

책정표에 준한다. <개정 2022.07.01.>

제14조 (기숙사비 환불) <개정 2022.07.01.>

- ① 정규 입학 입학 포기 및 중도 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개강일을 기준으로 기숙사비를 환불하며, 기물 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1천원 미만 절사)
입학 포기	개강일 이전	기숙사비 납부금액의 100%
중도 퇴사	입사기간별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이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개강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 사용료 2. 위약금 :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10% 공제	

- ② 정규 입학 또는 방학 입학 거주자가 별점 초과로 인하여 강제 퇴사를 할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기숙사비를 환불하며, 기물 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환불기준(1천원 미만 절사)	환불기준 (1천원 미만 절사)
강제 퇴사	입사기간별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이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개강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 사용료 2. 위약금 :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30% 공제	

- ③ 퇴사 절차 완료일을 퇴사 승인일로 하며 퇴사 승인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신설 2022.07.01.>

- ④ 본인 사망의 경우와 2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2.03.01.>

제15조 (식당이용)

- ① 식사는 선택식으로 개별로 식권을 구입한다.  
 ② 식권이 필요한 때에는 식당 내 식권 발급기를 이용하여 구입한다.  
 ③ 입사자는 식당 출입 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행정절차 및 지시사항 준수)

- ① 입사자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행정절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기숙사 행정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화재대피훈련 의무 참석)

- ①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기간 중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8조 (생활수칙)

- ① 입사자는 기숙사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감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로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을 위

측할 수 있다.

- ③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은 기숙사 내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정기적으로 호실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 점검, 일괄적인 시설 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 ④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은 호실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부과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추가 벌점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이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 (질서유지)

- ① 입사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입사자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20조 (안전관리)

- ① 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감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호실 안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 보유를 금지하며, 개인용품의 분실은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입사자가 호실을 비울 때는 문을 열쇠로 잠그는 등 모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양초, 신나 등의 인화 물질과 위험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2.07.01.>
- ⑦ 개인형 이동 장치 등을 호실 안에서 반입 및 충전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2.07.01.>

#### 제21조 (시설보호)

- ① 입사자는 학교 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음 입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기숙사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산정한 실비로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22조 (무단출입 금지)

- ① 입사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제23조 (위생철저)

- ① 기숙사 내 지정된 취식 공간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취식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생수를 호실 내에서 보관 및 음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 ③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 견과류, 과자는 호실 반입을 허용하나, 보관 및 취식 후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24조 (청결의무)

- ① 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입사자는 퇴사 시 본임 물품을 기숙사 내에 방치할 수 없으며 기숙사에서 임의로 물품 폐기처리에 따른 책임을 기숙사 행정실에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4.03.01.>

## 제4장 별 점

### 제25조 (별점부과)

- ① 입사자의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 상·별점 기준표에 따라 별점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별점은 합산되어 누적별점 점수에 따른 해당기간 기숙사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4.03.01.>

### 제26조 (제재)

- ① 사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누적별점 20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 2. 누적별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재학 중 두 학기 입사 불허 <개정 2024.03.01.>
- ② 누적별점 15점 미만으로 사감이 인정 시 별점차감을 위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 제5장 퇴 사

### 제27조 (퇴사신청)

- ① 입사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퇴사예정일을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4.03.01.>

### 제28조 (중도 퇴사자 조치) <개정 2022.03.01.>

- ① 입사 개시일 이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대 휴학 및 질병 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1. 입대 휴학 : 입영 통지서 사본
  - 2. 질병 휴학 : 질병 휴학 증명서

### 제29조 (강제퇴사 처분)

- ① 사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자를 강제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1. 기숙사에서 별점 초과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2. 기숙사비 미납자
  - 3. 입사자 선발 이후 기숙사 입사 자격에 하자가 있는 자
  -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5.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6.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강제 퇴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③ 제1항의 강제 퇴사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퇴사일) <개정 2022.07.01.>

① 정규 퇴사자는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퇴관 일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② 중도 퇴사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퇴사예정일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③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31조 (퇴사절차)

① 퇴사자는 호실 상태 점검 및 열쇠 반납 등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호실 청소 및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에게 호실 점검을 받은 후 호실 열쇠를 기숙사에 반납한다.

③ 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기숙사 내에 자전거 등 짐이 남아있는 경우 기숙사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6장 휴 관

제32조 (휴관기간)

①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퇴관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기 개관일 1일 전까지 휴관을 실시한다.

1. 8월 휴관 : 하계방학 퇴관일 다음날 ~ 2학기 정규 입사 개관일 1일 전

2. 2월 휴관 : 동계방학 퇴관일 다음날 ~ 1학기 정규 입사 개관일 1일 전

제33조 제33조(휴관기간 거주)

① 휴관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숙사에 잔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거주지 거리 점수 기준표

순번	지 역 구 분	거리점수
1	경기 수원, 화성, 오산	0
2	경기 과천, 안양, 평택, 안산, 의왕, 군포	5
3	경기 광명, 용인 / 서울 구로, 금천	10
4	서울 강남, 관악, 서초, 동작, 영등포 / 경기 부천, 시흥	15
5	서울 마포, 용산, 종로, 중 / 경기 성남, 분당	20
6	서울 동대문, 서대문, 강서, 양천 / 인천 계양, 부평	25
7	서울 성동, 성북, 송파, 광진 / 경기 안성, 충청 성환 / 인천 남구, 연수	30
8	충남 천안 / 인천 동구, 중구, 미추구홀 / 서울 강동, 은평	35
9	세종 조치원 / 인천 서구 / 서울 중랑, 도봉, 노원, 강북 / 인천 남동	40
10	경기 광주, 하남, 이천, 여주, 구리, 고양, 김포, 의정부	45
11	인천 강화, 경기 남양주, 양평, 파주, 양주,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50
12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충청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기타 통학 불가능한 거리	55



<별 표 2>

생활수칙 위반 상·벌점 기준표 <개정 2024.03.01.>

구분	상점 항목	상점
공통 사항	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및 대처한 자 ② 외부인 무단 출입을 신고한 자 ③ 시설물 파괴 행위 신고 및 제지한 자 ④ 기숙사 외부 및 공용실을 청소한 자(행정실 신고 후 실시) ⑤ 생활 우수자로 사감이 판단한 자 ⑥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한 후 행정실에 신고한 자 ⑦ 기타 부여된 상점	5점 3점 3점 3점 3점 1점 공지된 상점
구분	벌점 항목	벌점
기숙사 출입	① 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 출입 또는 호실 무단 변경·양도·명의 도용 ② 호실 내 빈방 무단사용 ③ 21시 이후 다른 호실 사생을 출입 시킨 자와 타인의 호실을 출입한 자, 이를 방조한 자 ④ 임시 출입카드 또는 호실 출입 키 기간 내 미반납 시 ⑤ 공동현관 통과(카드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의 카드로 출입) 및 비정상적인 무단출입(창문 또는 테라스 등) ⑥ 기숙사 통금 위반	20점 20점 5점 3점 5점 3점
기숙사 질서	① 기숙사 실내 흡연 및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인 행위 ② 기숙사 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폭언, 폭행 등 불손 행위 ③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동생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④ 퇴실 기간 이후 미퇴사 및 퇴사 시 지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쓰레기 등 방치 ⑤ 기숙사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기숙사 내 주류보관(빈병 포함) ⑥ 기숙사 무단 입·퇴사(입·퇴사절차 없이 입·무단퇴사, 호실청소 미비) ⑦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인 게시물 등록 ⑧ 호실 내 본인 방에서 본인 집기 외 집기사용 및 기숙사 행정팀 승인 없이 사생간 집기 사용 무단 변경 시 ⑨ 화재대피 훈련 미 이수 ⑩ 퇴사신청·입사등록 예정 일자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⑪ 소란, 소음, 풍기문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벤치, 주차장 등 기숙사 전체 공간 포함)	20점 20점 20점 15점 10점 10점 5점 5점 3점 3점 3점
기숙사 환경	① 애완동물 반입 및 키우는 행위(개, 고양이, 햄스터 등) ② 호실 및 공용공간(개인 냉장고 제외) 음식물 보관 ③ 취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뒤처리 미흡 및 위생상태 불량 등) ④ 매트리스 커버 미착용 시 ⑤ 호실 청소상태 불량(거실 및 호실 내 신발 착용 등)	20점 5점 5점 5점 3점
냉장고 보관	① 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유통기간 초과, 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3점
기숙사	① 공공기물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10점

시설	② 호실 외 공용공간 내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을 두는 행위 ③ 무인 택배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개인물품 보관 등)	3점 3점
금지 물품 반입	① 취사기구, 인화물질 등 기숙사 내 반입 금지 위험 물품 반입 (기숙사 홈페이지 명시)	15점
기타	① 기숙사 업무 관련 공지문에 기재된 절차 미준수	공지된 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이라 함은 사생 이외의 자를 말한다.</li> <li>•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호실에서 공동책임을 진다.</li> <li>• 공공기물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li> </ul>		

※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은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점기준표에 따라 별점을 부과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별점의 추가 부과를 건의 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① 누적별점 20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 ② 누적별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 5일 이내 강제퇴사 및 재학 중 두 학기 입사 불허

프로그램 및 외부행사 숙소사용료 책정표

1. 프로그램 숙소 사용료

구분	숙소사용료<개정 2024.03.01.>	
	1주일(7일)/1인당	1일/1인당
고운학사	90,000원	13,000원
글로벌 경상관 기숙사	150,000원	22,000원
시설보증금	200,000원/1인당	

- ① 숙소사용일이 주단위가 아닐 시에는 1일(1인당) 금액으로 산정한다.
    - 숙소사용료는 주단위(1인당) 혹은 1일(1인당) 사용료 중 택1 한다. 혼합하여 금액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3.01.>
  - ② 행사주관부서에서 입실 및 퇴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03.01.>
  - ③ 거주(행사) 기간 중 시설물 교와 파손 및 낙서, 매트리스 오염 등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사주관부서에서 변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4.03.01.>
  - ④ 출입카드 및 호실열쇠 분실 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2.03.01.>
    - 출입카드 : 10,000원 - 호실열쇠 : 10,000원
  - ⑤ 프로그램에 따라 시설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 시설 파손 및 훼손 시 동종 물품으로 구매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 \* 방수 매트리스 커버 지참 필수(미지참 시 입실 불가)

2. 방학 중 외부행사 숙소 사용료

구분	숙소사용료(1일/1인당) <개정 2024.03.01.>
고운학사	20,000원
글로벌 경상관 기숙사	30,000원

- ① 외부행사란 본교(각 부서 포함)에서 주최하지 아니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신설 2024.03.01.>
  - ② 숙소사용료는 인당, 일별 사용료로 산정한다. <개정 2024.03.01.>
  - ③ 행사주최기관 및 행사주관부서에서 입실 및 퇴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03.01.>
  - ④ 거주(행사) 기간 중 시설물 교와 파손 및 낙서, 매트리스 오염 등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사주최기관에서 변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4.03.01.>
  - ⑤ 출입카드 및 호실열쇠 분실 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2.03.01.>
    - 출입카드 : 10,000원 - 호실열쇠 : 10,000원
  - ⑥ 외부행사에 따라 시설보증금은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 시설 파손 및 훼손 시 동종 물품으로 구매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 \* 침구류, 방수 매트리스 커버 지참 필수(방수 매트리스 미지참 시 입실 불가)